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51호 2019. 7. 15(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63호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2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2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4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디에스종합건설(주) (대표 임홍남)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4블록
  - 나. 대지면적 : 31,363㎡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8,631.0028㎡ (지하 5층, 지상 4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1,0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120호, 판매시설 8개동
  - 마. 사 업 비 : 612,00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9. 1. ~ 2023. 2. 2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62 외 5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7.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7-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19-8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대로 1662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풍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8-42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92-1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송월정대 무친과 무령 고을의 이름 반영	거리가계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천동 692-25	인천광역시 서구 월드컵로 501-1 (마천동)	20090710	월드컵이 월드컵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월드컵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거리가계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6-3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04-1 (가좌동)	20090706	장고개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거리가계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6-3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88-1 (가좌동)	20090706	장고개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거리가계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5	인천광역시 서구 원자로 157-1 (석남동)	20090706	옛 건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거리가계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자로 101-1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거리가계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5	인천광역시 서구 원자로 32-1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거리가계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자로 35-1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거리가계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자로 106-1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거리가계
11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98-2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411-1 (신현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7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310-1 (석남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129-1 (가좌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22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205-1 (석남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5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97-1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371-1 (신현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6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97-1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371-2 (신현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4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330-1 (가좌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거리가계
1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0-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 220 (석남동)	20090922	가청동의 동명을 따. 가청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윗동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141-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07-1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중심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을 있던 마른 언덕)	거리가계
2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740	인천광역시 서구 도유지로 220-1 (검암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창자 도유지라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거리가계
21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4-2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24 (신현동)	20090922	신현동의 동명을 따 신현동의 원 이름인 새오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	
2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1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114-1 (가좌동)	20090922	여우가 자주 다니는 고개라는 뜻의 옛 지명을 반영	거리가계
23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74-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71 (신현동)	20090922	원창동의 동명을 따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배변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배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	
2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23-11	인천광역시 서구 읍도로 27-1 (신현동)	20090922	밤샘 밤샘 읍도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읍도로라고 명명	거리가계
2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11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110-1 (심곡동)	20090922	월마산의 한 봉우리인 탁옥봉의 이름을 따 명명	거리가계
26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69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4-1 (심곡동)	20090922	월마산의 한 봉우리인 탁옥봉의 이름을 따 명명	거리가계
2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86 (원창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2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3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126번길 13-1 (가좌동)	20090922	가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2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4-4	인천광역시 서구 가청로293번길 2-1 (석남동)	20090922	가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3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20	인천광역시 서구 가북로119번길 1-1 (석남동)	20090922	가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3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94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93번길 11-1 (가좌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3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88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95번길 4-22 (검암동)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3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1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17-1 (가좌동)	20090922	신진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거리가계
3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52-3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안길 13 (오류동)	20090922	단봉로23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3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메탈드로102번길 8-12 (청라동)	20120330	청라메탈드로의 시작점에서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내로173번길 3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결합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내로173번길 1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결합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3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54, 173-504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전로73번길 30 (가좌동)	20151113	보도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9-07-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청라동 7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68-11 (청라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0-12 (청라동)	소유자 신청	2019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07-1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78 (가정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 (원창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922	원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10 (심곡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922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렸던 송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86-1 (연희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922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렸던 송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9 (원창동)	건물번호 폐지	20090922	원창동의 동명용 땀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해안마을이어서 불어진 이름임	
6	인천광역시 서구 물도로 47-4 (신원동)	건축물대장 주소 (건축과-22617)	20090922	범엽 범성 물도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물도로라고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60 (청라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101111	심곡천변의 수변공간에서 착안	
8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375번길 29 (경서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태광건설
9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375번길 28 (경서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고울상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375번길 26 (경서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고울상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375번길 25 (경서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21 (경서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94 (원창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98 (청라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 (가정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가정2동 주민센터
1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28 (가정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710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가정어린이집
1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27 (심곡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271번길 14 (심곡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28 (원창동)	건물주소 현장확인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2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 나. 대지면적 : 69,448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21,097.4742m<sup>2</sup> (지하2층, 지상19~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27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57,402,785천원
4. 사업기간 : 2019. 03. 04. ~ 2022. 03. 03.
5. 변경사항
  - 가. 건축면적 변경(주민공동시설 체육관 면적 반영)
    - 기존 : 11,644.4011m<sup>2</sup>

- 변경 : 12,315.1711m<sup>2</sup>

나. 지하층 변경(재활용보관창고, 지열 기계실, 열교환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우수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피트, 팬룸, 집수정 등)

다. 보행로 및 승강기 설치

라. 세대 전면 조경 삭제 및 창호 변경

마. 문주 및 파일 추가

바. 벽체, 슬라브, 보, 기둥, 지하기초 변경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15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20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 반영(3년→5년)

- 현 자동판매기 시장수요(식음료용외 생필품 등 확대)에 맞추어 조례정비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주체 명확화
- 기존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2건) 일괄정비(부칙)

## 2. 주요내용

- 현 자동판매기의 수요가 확대(식음료용외 생필품 등)됨에 따라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식음료용” 삭제(안 제명,제1조,제2조,제3조,제4조 및 제6조)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설치의 허가와 위탁”으로 개정(안 제1조,제2조,제3조)
-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1~6급→중증,경증)을 반영(안 제6조,별표)하고 장애인 분야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 확대 개정(안 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 기존 장애등급 적용,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괄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자립지원과장)에게 2019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전화

-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 전화번호: 032-560-4313(팩스 032-560-2742)

붙임 1. 주요 관련법령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 주요 관련법령

###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2019. 10. 1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붙임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 '19. 7.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 반영(3년→5년)
- 현 자동판매기 시장수요(식음료용외 생필품 등 확대)에 맞추어 조례 정비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주체 명확화
- 기존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2건) 일괄정비 (부칙)

## 2. 주요내용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를 “자동판매기” 로 개정한다.(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으로 한다.(안 제1조)

- “자동판매기를 설치”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으로 한다.(안 제2조, 제3조)
- “3년” 을 “5년 이내” 으로 한다.(안 제5조제2항)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는” 을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은” 으로 한다.(안 제6조)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42조(생업 지원)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으로 한다.

제3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를 “자동판매기”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 을 “5년 이내” 로 한다.

제6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를 “자동판매기” 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과 자동 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 【별표】

##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65세 ~ 69세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3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복지단체</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u></p>	<p><u>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u>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 ----- ----- ----- ----- ----- <u>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u>----- ----- ----- ----- ----- ----- ----- ----- ----- ----- -----.</p>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  
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  
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생략)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  
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를 설치 할 때에는 이를 Green 서  
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복  
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  
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5조(계약)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  
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  
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제2조(적용의 범위) ①-----  
-----  
-----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  
가하거나 위탁-----  
-----.

②(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공고) -----  
-----  
-----  
-----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  
가하거나 위탁할 -----  
-----.

제4조(신청) -----  
----- 자동판매기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  
----- 5년 이내-----  
-----.

제6조(사업의 의무)-----  
-----  
----- 자동판매기 -----

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  
 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장애  
 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은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163호

##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의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 가. 구역명칭 :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 다. 면 적 : 195,500m<sup>2</sup>
- 라.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2. 시행(제안)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제안)자: (가칭)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 나. 시 행 방 식 : 혼용방식(수용 또는 환지)

###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5,500	100.0	
산업시설용지		128,030	65.5	
	소 계	59,960	30.7	
기반 시설 용지	도 로	20,369	10.5	
	주 차 장	3,967	2.0	
	공 원	10,651	5.4	
	녹 지	12,114	6.2	
	하 천	1,111	0.6	
	저 류 지	7,035	3.6	
	폐수처리시설	4,713	2.4	
기타시설용지		7,510	3.8	지원시설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5773)

오류왕길동행정복지센터 (☎ 032-560-3373)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가칭)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람내용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p>의 견</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11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2018.12.24. 「지방세 기본법」 세무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개정 사항 반영과 국세 및 우수 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 2018년 감사원 세무조사 관련 지적사항 반영 및 현행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법적안정성·예측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보완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 제11조제1항)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10일 → 15일 전까지로 연장(안 제21조)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의 조사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책임자의 관리의무(안 제36조제2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규정(안 제38조

## ○ 국세 및 우수 지자체 합리적인 제도 반영

- 중복조사 문제 해결 위해 “부분세무조사 제도” 신설(안제13조)
-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 통일(안 제14조)

## ○ 지방세 기본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세무조사 중지 중 자료제출 요구 등 금지(제25조)
- 조사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의무 신설(제34조제1항)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2과, 전화 032-560-4953, Fax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

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액 2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
2.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납세자
3.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1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최근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장부의 기록 및 보

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영세·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

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 3. 행정기관 자료

##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범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8)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10)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2)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 연 락 처 : ○ e-mail(담당자) :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97mm<sup>2</sup>×210mm<sup>2</sup>, 가로서식)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3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인천광역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3년분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우편번호 : 22726

※ 문의사항 전화 : (032)-                      FAX) 032-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수는 매년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제2호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자본금 (a)	종업원수 (b)	정당 세액 (c)		기납부 세액 (d)		차인세액 (e)(c-d)	
명칭	소재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m<sup>2</sup>이하는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m<sup>2</sup>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a)	①과세제외면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세액 (d)	기납부세액 1.1.1.1. (e)	납부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b)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수 산정방법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0000년까지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0000년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소계														
③ 종업원수	상시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법인세법 73조, 98조**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0000년	사업장	인천광역시    군구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	-------	-----	-------------------------------	------	--

구 분 별  구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인천시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에서 인천시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의 비율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 ① 정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의한 세액 기재
-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인천비율) (%)	법인세	정당 세액 ①	기납부 세액 ②	차인 세액 ③(①-②)
명칭	소재지	사업 개시일	(인천) 종업원수 (명)	(전국) 총종업원수 (명)	(인천) 사업장 (㎡)	(전국) 총사업장 (㎡)					

(297mm×210mm, 가로서식)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7.15. ~ 8.4.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7.15. ~ 8.4.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